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62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2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873,720원, 지방교육세 2,589,080원, 농어촌특별세 1,195,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고는" 뒤에 "2014. 8. 5."를, 제3쪽 제2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3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박현수

판사 장찬수